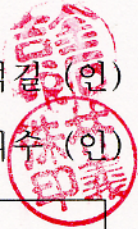


# 서 면 답 변 서

확인자    도 세 과 장    김석걸 (인)  
 작성자    세외수입담당    임의주 (인)



질문의원	전미애 · 박광섭	답변부서	도세과 세외수입담당
질문제목	시금고 체결 기준 및 절차		

**□ 질문요지**

○ 현재 농협과 시금고가 체결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 기준과 절차는?

**□ 답변내용**

- 우선 시금고의 재약정 결과를 말씀드리면,  
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05.12.31자로 도래됨에 따라 내부검토 결과를 토대로 05. 9. 16일 현 시금고인 농협중앙회파주시지부를 파주시금고로 재지정하고 06. 1.1 ~ 08. 12. 31까지 3년기간으로 수의약정 체결 한 바 있습니다.
-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하여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으며, 금고지정사무는 1998년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「금고업무편람」에 따른 것이나,
- 금고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금융기관별 경영공시자료를 검토·분석하고 「금고업무편람」에 제시된 선정기준인 금고운영능력(재무구조의 건전성), 금융기관의 공공성(지역사회기여도), 자금공급능력, 금고업무취급 노-하우, 지역주민 이용편리성,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, 금고운영의 수익성 등을 비교하여 결정한 것으로

○ 여러가지 지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고인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금고업무를 성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,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의 공공성과 안정성의 바탕위에 각종 농민지원사업, 재해농가지원, 농업인자녀 장학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클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을 포함한 관내 35개의 점포로 도농복합도시인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이 크다는 점에서

○ 현 금고인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로 하여금 시금고 업무를 계속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.